



문서번호	재무과-288
결재일자	2015.1.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5호

주무관	재산정책팀장	재무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김부수	박광호	김성철	김종순	01/06 이비오
협조	기획예산과장 이윤영 법률전문관 권설아 법제팀장 이상수			

#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



성 동 구

【재무과】



#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 계획

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증진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과 동법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,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 I 개정 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 (시행 2014.7.8)
-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 일부개정 (입법예고 2014.9.4)

## II 개정 이유

- 상위 법령 및 근거 법령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
-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의 만족도 제고
- 수요자 중심의 조례개정을 통한 공유재산 활용도 및 가치 향상

## III 주요 개정 내용

-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%이상 증가분에서 5%이상 증가분으로 조정함
  - 안 제34조를 개정하여 사용료·대부료 산정에 있어 전년도 대비 증가분에 감액대상을 10%에서 5%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사용료 등의 상승을 완화

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경우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변상금 징수를 유예함

- 안 제85조의3을 신설하여 무단점유의 경위, 경제적사정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 신설

■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- 제6조, 제28조, 제29조, 제32조, 제38조

## IV 추진 일정

-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 등----- 2015. 1월
-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----- 2015. 2월
- 일부 조례개정안 구의회 상정 및 의결----- 2015. 2월

- 붙임 1.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1부  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